

#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10월 21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관장 하도록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조정과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미구 보건소장이 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3조제3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시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둠.(안 제9조)
-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의 행정시책 반영, 회의참석 수당 및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분과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가?	○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됨.(보건관리과장)
○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통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앞으로 조례제정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할 것임.	○ 반영하겠음.(보건관리과장)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기 위해 동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보완·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17호
의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제안년월일 : 2008. 10. 21.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기 위해 동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함.

## 2. 수정 주요골자

- 제1조(목적)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함.
- 제2조(기능)에 ‘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 중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안 제2조(기능)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2조(기능)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u>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u>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u> 그리고 <u>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u> ----- ----- ----- -----</p>
<p>제2조(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5. <u>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2조(기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1. ----- ----- 2. ----- ----- 3. ----- ----- 4. ----- 5. <u>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건시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미구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역주민
3.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6.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포함]

##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건시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미구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역주민
3. 부천시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6.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시책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행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조례)

###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정 1996. 07. 18 조례 제1426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개정 2003. 02. 12 조례 제19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각종 보건시책에 대한 조정·심의
4.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원미구보건소 주무담당주사가, 서기는 원미구보건소 업무소관 소속직원으로 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서기는 업무소관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운동등의 전개)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등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1996. 7. 18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3. 2. 12 조례 제1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원의 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